

## 캐나다,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 2호)의 허용 품목 및 사용 기준 업데이트



### 식품 착색제 '아마란스', 허용 품목 및 최대 사용량을 업데이트하여 단독 사용 기준 규정

캐나다 보건부는 실제 식품 사용 기준을 반영하여 식품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마란스(amaranth)의 사용 기준을 업데이트 하고, 「[허용된 착색제 목록](#)」을 수정함

1. **배경** : 캐나다 보건부는 2017년 1월 발표되었던 「아마란스(amaranth)의 사용 기준 수정 제안 [NOP/AVP-0023]」에 따라 다양한 식품에 허용된 식품 착색제 아마란스의 사용 기준을 재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업데이트함. 이는 캐나다 식품 업계의 요구사항에 맞춰 아마란스를 착색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 섭취를 통해 아마란스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허용 기준을 실제 사용 수준에 맞춰 조정한 것임. 캐나다 보건부는 「[허용된 착색제 목록](#)」에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개의 합성 색소와 그룹화되어 No.3 착색제 성분으로 규정되었던 아마란스를 별도의 착색제 성분 No.3.2.1로 분리하고, 총 20개 허용 품목에 대한 사용 기준을 규정함

### 2. 대상 품목(아마란스 사용 가능 품목)

- |  |  |
|--|--|
| 1) 과일 잼, 젤리, 마멀레이드   | 11) 훈제 생선  |
| 2) *비표준화된 과일향 음료 농축액과 믹스   | 12) 과자류  |
| 3) 크림소다, 포도 소다 및 비표준화된 비탄산 과일맛 음료  | 13) 비표준화된 베이커리 제품  |
| 4) <b>에그노그(유제품 기반의 음료 제품), 요거트</b>   | 14) 아이스크림 및 냉동 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표준 과자류 및 해당 목록의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비표준 식품 |
| 5) 하드 캔디   | 15) 비표준화된 디저트(냉동 디저트 제외)와 비표준화된 디저트 토핑                           |
| 6) <b>아이스크림 믹스</b>   | 16) 비표준화된 디저트 믹스   |
| 7) <b>냉동 유제품 믹스(ice milk mix)</b>  | 17) 비표준화된 샐러드 드레싱  |
| 8) <b>리큐어, 비표준화된 주류</b>  | 18) 비표준화된 냉동 디저트   |
| 9) 향미 우유(저지방 우유, 우유 고형분을 첨가한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우유 고형분을 첨가한 무지방 우유, 에그노그외 비표준화된 유제품 음료) | 19) 비표준화된 과일 스프레드 및 비표준화된 디핑 소스                                  |
| 10) 셔벗   | 20) 비표준화된 조미료  |

\* '비표준화된' 식품은 캐나다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과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afe for Canada. Regulations)에서 정의한 품목별 식품 식별 표준(Standards of identity) 요건을 벗어난 제품을 의미함

### 3. 업데이트 된 아마란스의 사용 기준

- 한국에서 아마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연계하여 주요 품목만 정리하였으며, 전체 품목의 상세 사용 기준은 「[허용된 착색제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번호	첨가제	허용 품목	최대 사용 기준(단독 사용 기준)
3.2.1	아마란스	비표준화된 과일향 음료 농축액과 믹스	90ppm
		에그노그(유제품 기반의 음료 제품), 요거트	15ppm
		아이스크림 믹스	55ppm
		냉동 유제품 믹스(ice milk mix)	55ppm
		리큐어, 비표준화된 주류	300ppm

### 4. 시행 일정 : 2023년 11월 3일부터 발효

한국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 사용 기준 규정, 캐나다 기준과의 차이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3-60호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마란스(amaranth)를 '식용색소적색제2호'로 정의하고 총 13개 식품 품목에 사용 기준을 규정함.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허용된 착색제 목록](#)」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되는 식품이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이 허용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제2호)의 품목별 사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3-60호\_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 기준

첨가제	허용 품목	주용도
식용색소적색제2호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 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은 희석한 상태로 제한) 5.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단무지 제외)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착색제

### 출처

Health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Colouring Agents to Update the Permitted Uses of Amaranth in Foods, 2023.11.03  
 Health Canada, Health Canada's Proposal to Modify the Currently Permitted Uses of the Colouring Agent Amaranth in Various Foods, 2017.01.04